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moting Directions of Exchange Programs
between South and North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Gangwondo -

김 장 기* · 신 윤 창**

Kim, Jang-Gi · Shin, Youn-Chang

< 목 차 >

- I. 서 론
- II.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의 개념과 특성
- III.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실태분석
- IV.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
- V. 결 론

최근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적·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장기간 동안의 체제분리에 따른 남북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기반 조성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보다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대부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주도 하에 추진되었지만, 지난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하고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리된 지정학적 위치와 경계구역을 갖는 지역으로, 남북교류

논문 접수일: 2007년 2월 10일

*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제1저자는 2007. 3. 2일부로 강원대학교 경영혁신센터의 부센터장에서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로 이직하면서 논문접수 당시와는 달리 현직을 사용함.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협력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수준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중점 사업별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 강원도, 공동협력

This study examines the exchange programs to local govern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ume of policy directions activating exchange program in local govern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Local governments hadn't been exchanged with and cooperated by themselves. So, It's very interesting thing to deal with the exchange programs that understand as a important role of central government until now. In recent,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South and North Korea have exchanged with people, culture and materials. In addition, Gangwondo has tried to improve of South and North's relation through constructing of the exchange system. To enhance the program performance by the exchange coopera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emphasize a comprehensive approach on the constructing process of common relation in South and North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exchange cooperating relation in South and North local governments are discussed.

□ Keywords: South and North Gangwondo, exchange program, cooperative system

I. 서 론

남북교류협력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는 남북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궁극적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¹⁾ 남북교류협

1)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간차원에만 의존하던 남북교류협력을 정부차원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이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정치체제와는 무관하게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최현호, 2003:288-298).

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었던 남북의 상호불신과 적대감 증폭을 완화하고 남북의 체제통합,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통일시대의 대비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된다(최현호, 2003:288-290). 남북교류협력은 해방과 더불어 사상과 군사적으로 분리되었던 남북의 역사 의식과 문화, 경제발전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교류와 같이 특정분야에서 매우 제한된 교류협력활동이 아닌 정부·민간차원의 다양한 정책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영역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협력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교류협력활동에서 벗어나 다원적이며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만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체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과 민간부문에서 추진하였던 비공식적인 교류협력사업과는 달리 제도화된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일정한 기반조성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의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교류협력사업과 비교해서 유연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이점이 있기도 하다(유호룡·이준호, 2005:233).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상대적 이해관계는 남북교류협력관계의 불투명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을 회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낼 수 있다.

지방정부는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국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영향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및 실익관계로 인하여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시키는 현상마저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종의 지방 외교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국, 분단도의 현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적·정치적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중점 사업별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며 분단도인 강원도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강원도는 분단으로 겪은 정치·행정적 현실문제, 국제정세 변화의 민감성, 도민의 통일 염원과 기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타 지방정부와는 달리 2000년 이후 지정학적으로 분리된 남북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된다.

Ⅱ.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의 개념과 특성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보편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은 “일정한 경계 내외에 있는 둘 이상의 상이한 주체 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행위양식”으로 기술된다. 세부적인 의미에서의 교류는 문화와 사상 등의 조류가 서로 통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상호 교통하며 확대되는 현상으로 설명되며(엣센스 국어사전, 2006), 또한 협력행위는 “사람과 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합하여 돕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로서 해석된다(전신욱, 2002:27-28). 이런 관점에서 교류협력행위는 둘 이상의 교류주체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쌍방향의 상호작용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의 상이한 정책주체가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의 특수한 현실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국제적 교류인가 국내적 교류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²⁾ 또한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어느 정도 교류협력주체 간의 사전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호간의 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다양성, 난해성, 예측불가능성 등이 내재되어 있음으로 보편적인 교류협력행위로서 설명하는 것은 많은 제약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보편적 수준의 교류협력사업은 교류협력주체 간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호주의적 접근방식을 전제로 하며,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상호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적 속성, 공동의 이익관계, 상호의존성과 적응유직, 교류협력의 전략과 사업 등 쌍방향의 상호관계에서 공동의 원칙과 조건 등이 필요하다(홍석균·김장기, 2002:171-173). 즉 교류협력사업은 상호간의 기본조건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교류주체와 대상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 쌍방향의 원칙과 조건보다는 북한 측의 호응,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미흡 등

2) 전신욱 교수(2002)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을 교류협력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보다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한의 경우 고도의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지방정부는 행정체계상의 지위이며,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사항들이 있다. 또한 법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규정으로 볼 때, 남북교류는 국제교류보다는 국내교류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일 수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양한 저해요인이 등장할 수 있다(채경석, 2005:218-219). 이러한 현상은 현실조건에서 북한 지방정부는 남한보다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북한의 정치·행정체제가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교류협력사업이 불가피 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은 그 의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상호간의 뚜렷하고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호간의 공동발전과 이익추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정치적 영역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화된 교류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교류협력의 주체가 국가나 민간부문이 아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상호협력하거나 교우하는 상호주의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은 국제 정치적 상황과 남북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당히 영향력을 받는 특수한 교류협력의 실체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

국가수준의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인식전환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에서도 지역특성을 살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적·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과 굴곡현상이 대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비교적 과거보다는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초정부보다는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광역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은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직·간접적인 사업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형은 경제 교류, 인도적 지원, 체육교류, 문화교류 등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내부시스템 구축과 교류사업, 일방적 지원 vs 상호적 교류, 사업내용과 재정확보, 교류사업의 지속성, 지역주민의 참여 등 5가지의 준거기준에 의해 비교·분석되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채경석, 2005:221-229).³⁾

3) 채경석 교수(2005)는 지방정부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준거기준은 지방정부가 교류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지방정부 내에 갖추고 있는가, 남북교류가 남쪽의 일방적인 지원인가,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류협력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높은가 등을 교류협력사업의 필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특성과 함께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과 중점사업별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등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기금 못지않게 남북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제정과 남북교류협력 추진부서의 설치, 남북교류협력협회,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의 설치 등 상호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점사업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과 인적 교류, 문화교류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사정을 비교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관광·스포츠 등의 중점사업별로 교류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된다(채경석, 2005:22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교류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협력기반 조성이 요구되며, 상호간의 협력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 분석의 틀

우선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술되고 있다.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 등과 관계되며, 왕래는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교류 관계를, 교역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반출과 반입을,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주민(법인과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⁵⁾

4) 위의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고할 것.

5) 지방정부수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선 협력사업자 승인(제17조)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과 통일부 장관이 원할 경우에 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할 수 있어야만 한다(제16조, 제17조, 제18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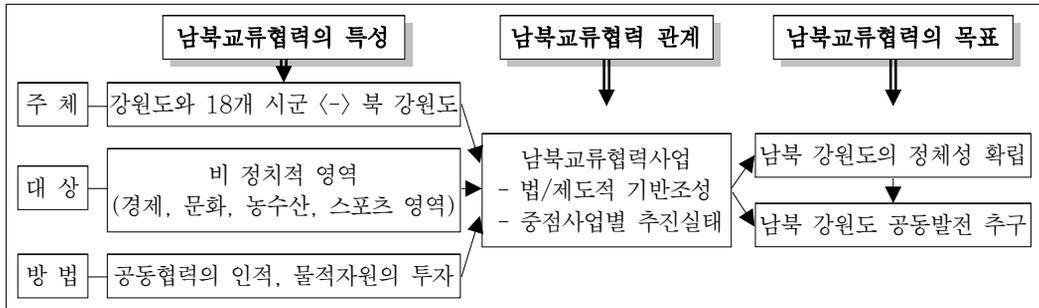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근거하여 추진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2003년 5월에 제정 시행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 지침에서 대북교류는 각각 지방정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정부는 대북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의 추진지원 지침과 함께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양한 사업형태가 나타났으며, 2004년 6월 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회문화교류 15건, 학술교류 3건, 농·수산업 교류 8건, 스포츠 교류 6건, 인도지원 사업 5건, 경제협력 3건, 자매결연 2건, 기타 3건 등 총 45건의 중점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다(황일봉, 2005:173-179).

지난 2000년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된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주체는 해당 지방정부가 상호간의 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성을 구비하게 되었으며, 둘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분야보다는 비정치적 영역에서 제도화된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갖게 되었으며, 셋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충원·충당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요재원의 충당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지원이 가능한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의 기금운영이 가능하며,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광역정부는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기반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남북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비전과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상호간의 국제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황에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 구성과 사업추진 목표설정, 교류협력사업의 주요 대상과 범위, 교류협력사업의 방법, 교류협력사업의 일정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관리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상호간의 사업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북한보다는 남한 지방정부의 인도적이고 호혜적인 사업형태에 치중하는 결과가 주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구성



Ⅲ.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실태분석

강원도 광역정부는 매우 활발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결과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는 북한지역과 접경지역인 접경지대를 기반으로 ‘물류기지’, ‘평화기지’, ‘관광기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입지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분단된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남북 강원도의 정체성과 공동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국가차원의 남북정책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작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기본방향과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유일 분단도, 남한 최대의 접경지역, 도민의 남다른 통일염원, 통일 1번지 등의 정책모토(policy motto)를 설정하여 비교적 활발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정부로서 평가되고 있다.

1. 법·제도적 기반의 조성 실태

지방정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또한 중앙정부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성사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남북 접경지대에 위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북이 직접적인 인접하고 있는 경계지역에서 지리적인 특성과 환경을 이용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이 그 만큼 필요하고, 크게는 국가차원의 남북정책에 기여하고 장래의 지역발전에에도 유용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강원도는 남북 접경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남북관계에 의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1998년 9월 광역정부 산하에 남북교류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6·15남북 공동성명 이후 2001년 3월 남북협력담당관실을 확대·개편함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강원도의 남북협력에 대한 전담기구의 설치에 전국의 지방정부 가운데서 최초로 시행된 제도화된 장치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조성은 남북교류협력단체 설립, 연구기구의 설치,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 및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금 조례 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provin.gangwon.kr>). 강원도는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와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45인의 위원으로 가능할 수 있고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 2004.3.6. 강원도 조례 제2998호).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방안,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와 자문,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심의권을 갖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 및 조사연구, 위원회 상정에 대한 안건의 사전검토와 조정,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적립되며, 관련기금의 사용은 남북 강원도 주민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의 소요자금 지원,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경비지출, 기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정을 나타내고 있다(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1998. 12. 31. 강원도 조례 제2667호).

이외에 법·제도적 차원의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은 남북교류협력 세미나 및 토론회, 북강원 포럼과 북강원편람 제작 배포, 여성단체 임직원 통일교육 실시, 권역별 사회단체 대상의 남북교류협력 순회특강,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및 사례 발표 등의 정책적·재정적 지원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은 타(他) 지방정부에 비해 내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사회기관 및 단체가 연계된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된다.

2. 중점 사업별 추진실태 분석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도예산과 기금모금 등에 의존하여 전국 시·도에서 가장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남북교류사업은 2000년 12월 강원도지사를 단장으로 강원도 대표단이 북강원도와 평양지역을 공식 방문하였고,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5개항의 기본합의서와 3개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의 전환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 강원도는 남북 강원도간의 합의서를 토대로 북강원도와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남북 강원도의 씨감자 원종시설의 건립사업이다. 씨감자 원종시설건립사업은 강원도가 남한 씨감자의 93%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우수한 종자를 품종별로 교환하여 시험재배와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기후와 여건이 비슷한 북강원도 지역에 씨감자종자원 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채경석, 2005:227).⁷⁾ 씨감자 원종시설의 건립은 사전합의서와는 달리 농업부문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강원대학교에서 씨감자 30톤, 천주교 춘천교구청에서 300만톤 등 민간기관의 참여와 함께 전개된 사업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⁸⁾

둘째, 남북 강원도의 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이다. 연어보호 증식사업은 2001년 4월 7일 강원도 북고성 남강지류(후천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55만 마리의 어린연어를 방류함으로써, 연어자원에 대한 남북 공동사업이 추진되었다. 연어자원방류사업은 양양연어연구센터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공급하였으며, 이후 2005년까지 제5차에 걸친 총 240만 마리의 어린연어보호증식사업이 나타났으며 2005년에는 북강원도 안변군 과평리의 안변연어

-
- 6) 강원도지사는 북한의 원산과 평양을 방문하여 고종덕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평양의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 회장,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섭 회장 등을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교환과 평양고려호텔에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5개 사항에 대해 기본합의를 이루어냈다. 관련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 대한 공동노력, 씨감자원종시설 건설, 솔잎혹파리공동방제사업, 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 등 3개 협력사업의 공동추진, 그 밖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대표단의 강원도 방문, 상호 연계유지 및 실무접촉 진행 등으로 정리된다(강원도, 2006. 내부자료 참조).
- 7) 북강원도의 씨감자 원종장 시설건립은 강원도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개선무역총회사와 합의된 사항으로, 시설계획은 저장고 1동 150평, 망실하우스 60동 6,000평 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 8) 북강원도의 씨감자 보급사업은 1997년 천주교 춘천교구청에서 감자 300만톤, 2000년 4월 강원대학교에서 씨감자 30톤 등을 보급하였고, 강원도 지방정부보다 민간부문의 참여에 의해 촉발된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

부화장에서 증식된 어린연어 40만 마리의 방류와 2006년에는 150만 마리를 방류하는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남북공동의 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의 추진은 106명의 강원도 인사가 북강원도를 방문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셋째, 남북 강원도의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다. 남북 강원도 공동의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잣나무 넓적잎벌 공동방제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시범방제·기술교류, 기자재와 약품지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전문가의 인적 교류 등으로 설명된다.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금강산 구룡연과 삼일포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60명과 넓적잎벌 공동방제사업 50명 등 강원도에서 110 명이 참가하는 인적교류의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이외의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은 북강원도 도로교통 여건개선을 위한 2004년 도로보수 자재 피치 2,000톤 제공, 동계종목 경기개최, 북한청소년의 드림프로그램 참가, 남북청소년 동계훈련 캠프,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및 협력, 그리고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등의 사업들이 합의 및 추진되었다. 특히 2005년 5월에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은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형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강원도 광역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부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이 발견되고 있지만 단계별 관련 사업규모의 확대와 추가 사업실시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강원도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은 사회 및 민간단체의 연계, 그리고 18개 시·군의 공동참여에 대한 기반조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관계에 대한 부분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표 1>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성과 분석

사 업 명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성과		비 고
	인적 자원의 교류 성과	물적 자원의 교류 성과	
씨감자 원종시설의 건립	-	- 저장고 1동 150평 - 망실하우스 60동	향후 예정계획임
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	- 인적 교류 106명	- 연어 240만 마리 방류 - 안변연어부화장 건립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 인적 교류 110명	- 금강산 구룡연과 삼일포 방제사업 추진 - 약제 및 기술 교류	-
기타 사업	- 민속축전 216명 참가 - 남북 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복측 36명 방문	- 도로자재 피치 2,000톤 지원 - 기타 인도적 지원사업	-

3. 종합적인 분석결과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채경석, 2005:288).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본다면,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상당부분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성공사례로서 기술될 수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강원도 광역정부의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지도력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신욱, 2003:40 -41). 이와 같은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평가여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완적인 방향과 관점에서의 관련 사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우선 법·제도적인 기반조성은 남북교류전담부서의 설치, 연구센터의 설치, 지원조례 및 기금조례의 제정,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협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교류협력의 기반조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18개 시·군의 지방정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은 관련기관의 종사자 및 학식·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단체와 기관의 정책주체들에 대한 참여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둘째, 중점사업별 교류협력사업은 남북 강원도 연어부화증식사업과 산림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사업성과를 상당부분 발생시키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추진단계별 사업규모의 확대와 추가사업의 시행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목표가 강원도의 지역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남북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남북 강원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가사업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강원도 광역정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관되고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기관의 참여는 제한된 형태로서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테면, 사회 및 민간단체의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회성의 교류협력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농협강원지역본부, 천주교 춘천교구청,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등에 의한 제한된 사업지원 형태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9) 사회기관 및 민간단체에 의한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은 강원대학교(1997년) 씨감자 30톤과 컴퓨터 200대 지원, 농협강원지역본부(2000년) 못자리용 비닐 24천롤, 천주교 춘천교구청(1997년, 2000년, 2001년, 2003년) 옥수수 1천톤, 감자 300톤, 엑스레이 검진차 5대, 연어 부화설비 2종,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2001년) 자전거 1천대 지원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일부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북강원도의 경제적 지원, 생산기반 시설조성, 건설자재 지원, 약재 및 기자재 제공 등 물적 자원중심의 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물적 자원 중심의 교류협력 못지않게, 인적 자원의 교류협력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강원도의 신뢰와 상호협력, 그리고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를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받는 국가차원의 거시적 사업 지원과 민간차원의 미시적인 사업보다는 중범위 수준의 교류협력 사업발굴을 통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클 것이다.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남북의 특수한 국제적·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에 의한 영향력보다는 남북 강원도의 도민 정체성과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중범위 사업규모의 사업발굴을 통해 경제, 농·수산업, 문화·관광, 스포츠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교류협력사업의 발굴이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IV.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 달성은 자체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음으로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류대상 지역에 관한 정보, 대북창구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추진절차에 대한 정보,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 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제한된 환경을 갖고 있다(황일봉, 2005:182-183).

그렇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한적인 조건과 상황에서도,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역특성을 살리고 남북 강원도의 정체성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점이 크다. 하지만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소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상승적인 효과와 성과를 기대하고 활성화된 남북 강원도의 공동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루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국제적·국가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국가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에서도 북핵의 위협과 위기에서도 6.15남북정상회담 개최,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 개성공단의 건설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광역 및 지방정부수준에서 협력 가능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발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사업의 추진단계에 맞는 추가적인 사업규모와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될 수 있다.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씨감자 종자지원, 연어부화증식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위사업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사업의 확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테면 남북교류협력의 단위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연어부화증식사업의 경우 어린연어 부화증식사업, 남북 강원도 지역의 공동방류 사업, 연어부화장 시설조성 사업, 연어의 회귀 과정에 대한 공동연구지원 사업, 연어생산·가공·판매 사업 등 추가적인 공동협력의 사업발굴이 추진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강원도와 사회기관·단체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초창기에 대학,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일부 사회기관의 참여가 대두하였으나, 이후 강원도 광역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관함으로써 공공기관, 사회단체, 주민사회의 공동협력과 노력은 매우 제한된 성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리 생각해보면, 지방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점하게 되면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은 매우 제한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북강원도 지역과의 학술 및 사회행사 교류, 청년단체 교류, 환경단체 교류, 여성단체 및 종교단체 교류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과 직업훈련학교, 그리고 사회단체는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북강원도 지역주민의 교육훈련과 재교육 등에 기여하는 공동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넷째,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기반 조성은 강원도의 특화된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양성교육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강원도 지방공무원, 대학시설, 철원의 통일 교육원,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협회 등 기존 이 교육 가능한 자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외 남북교류협력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문가 양성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물론 전국 지방정부를 수요시장으로 남북교류의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분단된 남북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하는 일

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공동발전계획의 수립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호혜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강원도 광역정부에 의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폭을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강원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 강원도의 잠재자원 발굴을 위한 공동비전과 전략수립, 교류협력의 사업목표와 추진전략, 강원도와 시·군의 교류협력부문별 사업 발굴, 기존 교류협력사업의 확대방안, 강원도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참여방안, 교류협력 재원의 확보방안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강원도 광역정부에 의한 북 강원도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사업추진 형태를 유지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교류협력사업은 그 의미 자체에서 쌍방향의 사업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업 형태이며,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전략, 교류협력사업주체의 다양화와 참여유도, 교류협력사업의 대상발굴과 확대,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V. 결 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남북교류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전개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을 성사시킨 지방정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전신욱, 2004; 황일봉, 2005:187-188).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정부수준에서 남북교류협력관계의 기반조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제한된 차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정세, 교류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교류협력대상지역의 정보 부족,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조건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강원도 광역정부는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을 타(他) 지방정부에 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촉진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강원도 광역정부는 남북교류사업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적 환경요인으로 설명되는 국제적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을 분석한 결과,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200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교류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왔고,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조성과 중점 사업별 추진실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광역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의 관계가 타(他) 지방정부와는 달리 법·제도적 기반조성,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책지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재원확보, 문화·스포츠 행사 등의 교류협력사업 확대 등 성공적인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지속적인 관점에서 질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이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북핵 실험으로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예민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날 수 있다.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남북교류의 다양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지방정부수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사업은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의 추진, 교류대상 지역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원, 지역주민의 지지와 후원,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사례 및 전략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기반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점검하면서, 지방정부수준에서 교류협력사업의 접근방법과 추진방식이 강원도 광역정부수준의 호혜적이거나 인도적인 관점에서 제한된 교류협력사업이 발생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형태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 지향,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공동이익과 상호신뢰 형성, 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참고문헌】

- 강도원. (200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발전방안,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소식 제2호.
- 금창호. (2001).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 및 접근방법,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 강원도. (2001). 강원도의 남북협력-남북강원이 하나.
- 김경량. (1999). 독일통일과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 김영운. (2004).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 현황과 과제, 민주평통 제48차 지역협력분과위원회 발표논문.
- 김학성·최진욱. (2001).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총서 01-06, 통일연구원.
- 양현모. (200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1(2): 한국행정연구원.
- 유호룡·이준호. (2005).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복지행정연구, 21: 233-255.
- 전신욱. (2003).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과학연구, 14(1): 25-56.
- 전영선. (2006). 2000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월간 아태지역동향: 15-23.
- 채경석. (2005). 지방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제도화, 한국동북아논총, 34: 217-241.
- 최현호. (2003).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석, 국민윤리연구, 58: 287-311.
- 한부영. (2000).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지방행정연구, 14(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일봉. (2005).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1): 159-191.
- Schmidt, S. M. and T. Kochan. (1977).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 Patterns and Motiv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2): 220-234.
- Weiss, J. A. (1987). Pathways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7(1): 94-117.
- Whon-il, Park. How to Enhanc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Based up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북한법 연구, 8: 337-361.
- Wright, D. S. (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 3d ed, C.A :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